

구미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작가들에게는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한 구미시의회 동의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1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5)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6)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7)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8)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다. 위탁사무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라. 시설개요

- 1) 시 설 명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 2) 소 재 지 : 구미시 고아읍 횡산리 47(구, 대방초등학교)
 - 3) 규 모 : 연면적 1,296㎡, 대지면적 11,599㎡
 - 4) 주요시설 : 작업실 8실, 체험교실 6실, 가마실 2실, 창고 등
- 마.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5년)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재)구미문화재단]
- 사. 위탁조건 :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 아. 소요예산 : 연 40,409천원 정도

(단위 : 천원)

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비고
40,409	3,209	17,900	16,300	3,000	

3. 부서의견

- 가.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은 체계적인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시설관리 등 행정관리 사무입니다.
- 나. 또한, 전문적인 기획 및 운영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하고, 관람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 구미문화재단은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의 운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가. 위탁시설 현황

나. 위치도 및 조감도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위탁시설 현황

<건축물>

층별	연면적	건축물 내역(면적 m ²)	비고
본관 1층	388.8m ²	작가별 레지던시 8실(388.8)	임차
본관 2층	388.8m ²	체험교실 4실(388.8)	
별관	259.2m ²	동창회 사무실 1실(64.8) 식당 1실(64.8) 창고 2실(129.6)	
기타	259.2m ²	화장실 2실(61.61) 가마실 2실(33.75) 체험교실 2실(92.84)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전경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문화예술의 창작 및 교육 활동 지원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
5.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7. 문화예술 시설의 수탁·운영 관리
8.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창작공간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항에 따라 창작공간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창작공간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 요인

-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된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사업비 시비 100%로 추계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2028)	5차년도 (2029)	합계
구분	인건비	3,209	3,305	3,404	3,506	3,611	17,035
	사무관리비	17,900	18,437	18,990	19,560	20,147	95,034
	공공운영비	16,300	16,789	17,293	17,812	18,346	86,540
	사업비	3,000	3,090	3,183	3,278	3,376	15,927
	총비용	40,409	41,621	42,870	44,156	45,480	214,536

※ 물가반영을 연 3% 적용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시비	40,409	41,621	42,870	44,156	45,480	214,536
	합계	40,409	41,621	42,870	44,156	45,480	214,536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문혜리(☎480-6604)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총 계	40,409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3,209	· 환경정비(제초작업) 인부 - 80,240원 × 2명 × 20회 = 3,209,600원
사무관리비 (임차료)	15,600	· 시설 임차 - 15,000,000원 × 1식 = 15,000,000원 · 정수기 임차 - 50,000원 × 1대 × 12월 = 600,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300	· 환경정비 - 550,000원 × 2회 = 1,1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체세)	11,900	· 상하수도요금 -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 전기요금 - 800,000원 × 12월 = 9,600,000원 · 통신요금 - 50,000원 × 12월 = 600,000원 · 화재보험료 - 500,000원 × 1식 = 500,000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4,400	· 건물 유지관리비 - 4,000원 × 1,100m² = 4,400,000원
전시 및 행사 (사업비)	3,000	· 월동준비전 - 3,000,000원 × 1식 = 3,000,000원

소 관 부 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박 향 목
	팀 장	오 명 화
	담 당 자	문 혜 리 (480-6604)